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5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안호영 · 이용우 · 윤준병
박 정 · 박희승 · 김준혁
김종민 · 김우영 · 이춘석
조계원 · 민병덕 · 김한규
장철민 · 이성윤 · 안도걸
의원(15인)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등 탈탄소 대응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고, 탈탄소 이행 및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역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및 그 종사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완료되는 시기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함(안 제5조).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에 관한 사항, 석탄화력발전사업자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 9조).

바.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탈석탄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및 그 종사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화력발전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 사업으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석탄을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설비의 가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석탄화력발

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된 시점에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그 폐쇄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를 말하며,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부터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한다.

7.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8. “탈석탄”이란 석탄을 전력 생산의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사회·경제·문화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

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 및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탈석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또는 관련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회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석탄 달성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및 근로조건의 저하 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와 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른다.

제5조(탈석탄 목표연도)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완료되는 시기는 2030년부터 2035년까지의 기간에서 제9조에 따른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한다.

제6조(탈석탄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서 정한 연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모든 석탄화력발전설비에 대한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 및 국제적 기준
3. 전력의 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와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당한 전환을 위한 노동자·지역사회의 보호 및 지원
6. 제7조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제출하는 폐쇄신청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탈석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별 폐쇄 시점에 관한 사항
2. 석탄화력발전사업자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사업자별 재생에너지 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4.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 저하 방지에 관한 사항

5.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탈석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탈석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탈석탄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탈석탄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신청 등) ①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

2. 석탄화력발전소의 철거에 관한 계획

3.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재생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 계획

4. 해당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계획.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고용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해당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재위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석탄화력발전산

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계획.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고용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폐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에 따른 탈석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폐쇄신청서를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상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종료 시점에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제출한 폐쇄신청서가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탈석탄위원회의 설치)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각 호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사업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대표에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하며, 석탄화력발전산업 내 다양한 업무 특성과 환경에 따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1. 제5조에 따른 탈석탄 목표연도를 정하는 사항

2. 제6조에 따른 탈석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관한 사항

3.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 등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

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본다.

제12조(정의로운 노동전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는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그 소속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발전사업자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중 발전사업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수반되는 노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에 종사하는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하여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그 고용을 승계하여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위탁(재위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그 소속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준하여 그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고용의 유지, 승계, 보장 및 근로조건의 저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탈석탄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인구, 환경, 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2. 가동이 종료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재생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 사항
4.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과 연계한 지역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회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재원의 확보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탈석탄 및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와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탈석탄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보상 및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탈석탄계획 및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와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보상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재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